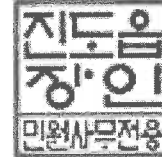


직권 조치 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4년 11월 07일

진도읍장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김 *열	김 *열 1977-11-01	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서부해안로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4-11-07